

의안번호	제 450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 충청북도의의회 기본 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연월일	2020년 6월 4일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50
----------	-----

발의연월일 : 2020년 6월 4일

발 의 자 : 김영주, 허창원, 이상정,  
서동학, 정상교, 육미선,  
최경천, 윤남진, 오영탁,  
임영은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 등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민의를 대의하는 충청북도의회의 위상과 지위 등을 규정한 기본 조례가 없는 상황임
- 충청북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개별 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함.

## 2. 주요내용

### 가. 충청북도의회의 총칙(안 제1조 내지 제4조)

- 의회는 도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의 기본이념과 의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제원칙을 규정함

### 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내지 제10조)

- (제5조 내지 제8조)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130일 이내로 하며 정례회는 매년 2회(1차 : 6월 8일, 2차 : 11월 8일) 개최함

- (제9조 내지 제10조) 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 등을 하며 매회기 집회일에는 개회식을 행함

#### **다. 의회의 기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내지 제20조)**

- (제11조 내지 제18조) 의장의 직무는 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감독함을 규정하고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제19조 내지 제20조)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을 위해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함

#### **라. 의원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내지 제27조)**

- (제21조 내지 제23조)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등록하며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정하고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선서를 함
- (제24조 내지 제27조)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 또는 결석할 경우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제출하며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고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자격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국제교류 등을 위해 공무 국외출장을 할 수 있음

#### **마.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에 관한 사항(안 제28조 내지 제43조)**

- (제28조 교섭단체의 구성)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며,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둠

- (제29조 내지 제43조)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한 6개 상임위원회의 명칭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의 주요사항과 전문가 활용 근거 규정을 정함

#### 바.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안 제44조 내지 제50조)

- (제44조 및 제45조)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하여 정함
- (제46조 내지 제50조) 의회는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질문(서면질문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서류 제출요구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음

#### 사. 질서 및 경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51조 내지 제56조)

- (제51조 내지 제56조)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해 경찰관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해 행위와 출입 및 방청을 제한할 수 있고 회의장 내에서 녹음과 녹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3. 의안전문 : 붙임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 예산 및 규제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 : 2020. 5. 27. ~ 2020. 6. 2.(5일간)

##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민의 대의기관인 충청북도의회의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충청북도 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북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 그 의사결정에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원칙)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용하여 창의적인 의사를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원칙) ① 의원은 도민전체의 대표로서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사표명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2장 회의운영

제5조(연간 회의 총일수)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의회운영 기본일정)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7조(회기)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60일 이내로 하며,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8조(정례회의 집회일) ① 의회의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로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1. 제1차 정례회 : 매년 6월 8일

2. 제2차 정례회 : 매년 11월 8일

② 제1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제9조(회의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을 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도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 개회식을 행한다.

### 제3장 의회의 기관 등

제11조(의장의 직무)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2조(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당일 5분 이내의 정견 및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거는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전 5일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위원을, 최다선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각각 선거한다.

제13조(의장의 겸직제한) ① 의장은 부의장·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장과 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② 의장선거일이 부의장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에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종료한다.

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또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의 제척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이 사망·사직·불신임·퇴직 등으로 궐위된 경우와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 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먼저 선출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16조(보궐선거)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제17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 (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의장과 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19조(사무처)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사무처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한다.

제20조(입법·법률고문) ① 의회의 입법과 법률 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법률고문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입법·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에서 정한다.

## 제4장 의원

제21조(등록)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처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22조(의석배정) ①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이를 정한다.

② 의원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배정은 사무처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23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국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지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본회의에서 선서한다.

제24조(청가 및 결석) ①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5조(사직)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의원의 사직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사직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제26조(자격심사) 의원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공무국외출장) ① 의원은 국제교류,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을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교섭단체 및 위원회와 위원

제28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소속의원 명부와 대표의원 직인 및 사인 인영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소속의원 명부 대신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30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심사와 청원과 진정서 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

####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정책복지위원회

가.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리실, 보건복지국, 충청도립대학교,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북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인재양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청북도 충주의료원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충북여성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3. 행정문화위원회

가.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북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 4. 산업경제위원회

가. 경제통상국, 신성장산업국, 농정국, 충청북도농업기술원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충북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

마. 충북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바. 충북과학기술혁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

## 5. 건설환경소방위원회

가. 재난안전실,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환경산림국, 소방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오송바이오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충청북도교통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충북개발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

## 6. 교육위원회

가.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③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도 속하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의장이 이를 정한다.

제31조(상임위원회의 위원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한다.

제32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 의원은 한 개의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33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날까지 재임한다.

② 소속 위원회를 변경하거나 중도 사퇴에 따라 새로 보임되고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③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5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별히 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그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6조(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7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7명 이내로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3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39조(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선임 등) ①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이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정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③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은 각 상임위원회의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 또는 개선한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과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에 따라 정한다.

⑤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4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4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43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위원회 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있는 3명 이내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자문위원의 직무내용과 수당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답변

제44조(도지사·교육감 등의 출석요구) ① 의회는 본회의 의결로 도지사·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이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의결로 의장을 거쳐 도지사·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도지사·교육감이나 관계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도지사·교육감은 관계공무원에게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는 이유를 서면으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시작 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5조(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등의 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지사·부교육감
2.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국·단·본부장, 담당관·과장급
3.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4.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 행정기관의 장(교육장)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장
6.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교육청의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출장소 소속 공무원 중 도 본청 및 도교육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제46조(집행기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도정 및 지방교육 행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대하여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질문(이하 “대집행기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집행기관질문을 실시하는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③ 질문신청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질문순서를 신청순으로

하되, 일문일답을 우선으로 한다.

④ 질문신청 의원은 질문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도지사·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도지사·교육감은 의장에게 답변서(일문일답의 경우에는 답변요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출일과 송부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로 한다.

1. 신청서 제출일 : 회기 개시일 5일 전
2. 질문서 송부일 : 질문일 4일 전
3. 답변서 제출일 : 답변일 2일 전

제47조(서면질문) ① 의원이 도지사·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교육감에게 이송한다.

② 도지사·교육감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48조(도지사·교육감 등의 발언) 도지사·교육감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서류제출요구) 의회는 법 제40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도지

사 또는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0조(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다.

## 제7장 질서 및 경호

제51조(경호)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 경호가 긴급히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이 단독으로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52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또는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이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료, 문서 등의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녹음·녹화·촬영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
6.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사용하여 외부와 통화·통신을 하거나 통신기기를 작동하게 하는 행위
7. 그 밖의 폭력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제53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회에서 출입과 방청허가를 받은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한 회의장 안에는 의원과 그 밖의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4조(방청의 허가) ① 본회의장의 방청은 의장이,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위원장이 방청권을 발행하여 허가한다.

제55조(방청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 등 방청과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사람
2.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말 또는 행동을 하거나 집단행동을 하려는 사람
3. 그 밖에 회의장 내외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이나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청인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6조(녹음과 녹화 등)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녹음과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 초에 허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경우에는 허가를 얻고자 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 녹음과 녹화 등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과 녹화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57조(회의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의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북도의회 회의 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2.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3.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 4.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충청북도회 회의규칙」”을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제21조중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

② 충청북도의회 의원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를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0조”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의결·처분,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 관계법령 발췌

### □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35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다른 지방의회의 의원
2. 헌법재판소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5.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임직원
6.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와 연합회를 포함한다)의 임직원과 이들 조합·금고의 중앙회장이나 연합회장
7.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교원
8.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는 직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겸임할 수 없도록 정하는 직

②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체포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각급 법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이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

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4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임사회)** ①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

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개회 · 휴회 · 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 · 휴회 · 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의장 · 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의원 중에서 시 · 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 · 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 · 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9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0조(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지방의회의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2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53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4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48조제1항, 제52조 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자가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57조(윤리특별위원회)**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8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5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위원회에서의 방청 등)** ① 위원회에서는 해당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방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65조(회의의 공개 등)** ①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7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79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82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이나 위원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면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85조(방청인에 대한 단속)** ①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장은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③ 방청석이 소란하면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

④ 방청인에 대한 단속에 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제87조(징계의 요구)** ①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86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② 제83조제1항을 위반한 의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1. 별정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제92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교육기관의 설치) 교육감은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